

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3년 11월 15일
- 회부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3. 개정이유

내무부 소관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따른 특별회계의 폐지 및 개정조례(준칙)에 의거 조례 개정.

4. 주요골자

- 제정 및 목적의 특별회계 내용 삭제 (조례 제4조 개정)
- 세입, 세출, 예비비 준용 (조례 제3,4,8,9조) 및 특별회계 관직지정 삭제
- 주택개량사업 대출금리 인하 조정 (년 8%→ 6.5%)
(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)

5. 검토의견

내무부 소관의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따른 특별회계의 폐지 및 개정조례(준칙)에 의거 등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세입, 세출, 관직 지정등은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므로 등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6.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별첨